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반환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 마련〉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097호)

2025. 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I. 개요

1. 최보윤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09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10. 31.
- (3) 회 부 일 : 2024. 11.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생략) <u><신설></u>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u>
③ (생략) ⑤ <u>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설></u>	③ (현행과 같음) ④ <u>등록증(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u> -----. ⑤ <u>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등록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u>

⑥ ~ ⑨ (생략)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의2.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

된다.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 모바일 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

-- 반환·회수 -----
-----.

제87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4항-----

-----.

2의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

<u>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u> <u><신 설></u> 3. ~ 5. 삭제 6. ~ 16. (생략)	<u>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u> <u>2의3. 제3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한 자</u> 6. ~ 16. (현행과 같음)
--	---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제32조의3제2항, 제87조제2호 및 제2의2호에서는 각각 ①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② 반환, ③ 위법한 양도 또는 대여 및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참고자료 1: 관련 현행 법조문).
- 개정안은 2025년 말부터 발급 예정인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회수의 법적 근거와 부정 사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와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임.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2025년 12월 중으로 발급을 개시하여, 약 3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2026년 3월부터는 본 발급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2025년 내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 및 개정안 관련 사항 정리 >

구분 (현행 기준)	현행법 주요내용	개정안 주요내용
제32조제1항 및 제5항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에게 장애인등록증을 내주어야 함</u> • <u>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음</u> • <u>등록증에 모바일등록증 포함</u> • <u>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 부정 사용금지(제5항 신설)</u>
제32조의3제2항	•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u>	• <u>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전자적으로 회수하여야 함(제4항 신설)</u> • <u>취소된 등록증 사용금지(제5항 신설)</u>
제87조제2호, 제2의2호	• <u>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u>	• <u>다른 사람 명의의 등록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제2의2호 개정), 등록이 취소된 이후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한 자(제2의3호 신설)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u>

□ 현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과 유사한 사례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는 2024년 12월부터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실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는 각각 아래의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음.

< 개정안과 유사입법례 비교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주민등록법」(24.12.27.시행)	「도로교통법」(24.10.25.시행)
제32조(장애인등록)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이 <u>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u>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장애인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u>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u>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후단 생략)	제85조의2(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u>모바일 운전면허증</u>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의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그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포함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8의2.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제1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u>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u> 에 처한다. 3의3. 제9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 다만,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2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에도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시행일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앞서 살펴본 「주민등록법」 및 「도로교통법」의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도입에 따른 개정으로 부칙 시행일을 각각 공포 후 1년과 공포 후 약 9개월¹⁾로 정한바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2025년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예정이므로 그 근거 마련을 위한 등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내에 국회 통과 필요

문 의 처
02)6788-5502

1)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관한 「도로교통법」은 2024. 1. 30. 개정하여 2024. 10. 25. 시행됨.

〈참고자료 1: 관련 현행 법조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⑨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자

2의2.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